

또한, 올해말까지 톤세제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선박 요건과 정부 확인절차 등 세부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고 선박의 운항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권을 없애고 항운노조원을 회사별 상시 근로자로 고용하는 형

태로 체제가 전환된다. 정부는 우선 부산과 인천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다른 항만들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항만에 무선인식 기술을 활용한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도입, 컨테이너터미널 자동화 및 수송화물과 운송차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항만인력공급체제지원특별법 12월23일 공포

해양부, 개편위원회 구성 하위법 제정 추진

지난 12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만인력공급체제지원특별법(법률7759호)이 23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상용화지원특별법은 부칙 제1조에 의거 3월24일부터 본격 발효된다.

해양부는 상용화 협상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상용화 소요재원을 합의하고 협상일정 등 로드맵을 작성 중이며 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운노조 파업에 대비해 항만비상운영 매뉴얼을 보완하고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상용화법 부칙 3조에 우선 상용화 도입이 규정돼 있는 부산항과 인천항 항운노조는 상용화 협상을 대비해 작업환경과 작업형태, 투입인원 등 자료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운노조 한 관계자는 현재 지도부에서 해양부와의 협상에 나설지 아니면 협상자체를 거부할지 명확한 노선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상용화 협상에 나선다는 가정하에 외부용역을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효율적인 상용화 추진을 위해 항운노조 3인, 사용자 3인, 정부 2인, 공공단체 2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되는 '개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상용화지원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현행 항만노무공급체제를 항만운송사업자가 항운노조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상용화 체제로 개편하되 노사정 합의에 의해 실시하며, 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다.

둘째, 상용화 되는 항운노조원의 정년, 임금 수준 등 기존 근로조건은 보장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항만운송사업자는 항만시설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체제 개편으로 항운노조원이 일시 퇴직하게 되어 부족한 퇴직금을 정부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개편시 희망퇴직자에 대해 생계지원금을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